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9일, 주호영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1.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호영의원)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음.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원격대학 출신으로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도입 이래 10여년간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으며,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 재활에 기여해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보건교육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등 다양한 국가자격증이 원격대학에서의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그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형평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은 실습·실시수업이 충분히 담보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

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2항 및 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연광석)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언어재활사의 응시요건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2급 언어재활사 시험 시 ‘원격대학’ 졸업자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원격대학 졸업자 중 2급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자는 2,071명으로, 이는 전체 합격자 14,056명 중 14.7%에 이르는 수치임.

그런데 최근 언어재활사의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이외에 ‘원격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까지 2급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따라서 기존에 원격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언어재활사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2024년 제13회 시험(2024.11.30. 실시함)부터는 원격대학 학위취득자는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었음.

개정안은 언어재활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

하고, 부칙에 특례 및 경과조치를 둬으로써,¹⁾ 원격대학을 졸업한 기존 합격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개정안 시행 전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응시자격 요건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임.

언어재활사와 유사한 장애인 전문인력인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경우에도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을 인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우려 사항인 원격대학의 경우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수준의 실습·실기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습 이수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없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대학 학위취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실습과목의 운영 형태(대면 실습장소 확보 등) 등을 보다 철저히 정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단서조항에 따른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부칙을 통하여 개정안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사법부의 최종결정을 입법으로 변경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논의의 여지가 있어 보임.

1) 개정안 부칙 제2조(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원격대학에서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의 경우, 기존 시험 안내를 신뢰하였던 것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들에 대한 응시자격 부정을 요구하는 비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와의 관계에서는 어느 당사자의 이익이 보호가치가 큰 것인지의 형량 문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존 원격대학 출신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